

## II

### 국회 여성·가족 관련 개정안 동향

2016년 5월 30일 ~ 2017년 5월 29일

여성노동 및 일·가정 양립

여성(젠더)폭력

가족 및 돌봄 지원

성평등 및 성주류화

여성 건강

여성·가족을 둘러싼 입법 현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30일 제20대 국회가 개원 한 이후 1년(2016년 5월 30일~2017년 5월 29일)간 이루어진 여성·가족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및 같은 시기에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젠더와 입법  
Brief

## 여성노동 및 일·가정 양립

여성노동 및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채용·고용 시 성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거나,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확대하며, 난임치료휴가제 신설을 비롯하여, 현재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개정안 중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01875)'은 2016년 12월 1일 수정 가결되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사후관리 조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되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발의, 의안번호: 2005872)'은 2017년 3월 2일 원안 가결되어 관련 기관 체계가 정비되었다.

이하에서는 여성노동 및 일·가정 양립 관련하여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고용 상 성차별 금지

### 고용 상 성차별 금지 강화

고용 상 성차별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모집·채용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사진 부착이나 가족의 직업·재산상황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sup>1)</sup> 채용·고용 시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 명시 및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동법 개정안<sup>2)</sup>이 발의되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일부개정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에 더하여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개정안<sup>3)</sup>도 발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34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에도 많은 기업들이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진을 부착하게 하거나 부모의 직업·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근로자의 채용·모집 단계에서 직접적·간접적 차별을 초래함.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사진 부착이나 부모의 직업·재산상황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평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안 제7조제2항).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345)

이외에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217)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근로자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사항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1호 신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384)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63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38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임신 여부 및 자녀출산 계획 등을 사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여성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실질적인 차별이 만연함. 이에 채용·고용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안 제7조제1항),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근로권을 강화함(안 제22조의4 신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63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비정규직 고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처우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근로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6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

사회의 더 많은 영역에서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 임금 지급 등에서 남녀 차별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76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50.9%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8위이고, 여성 근로자 평균 연봉은 2,100만원으로 남성근로자 3,700만원의 57.5% 수준으로 나타나 현행법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또한 사용자, 직업안정기관의 장, 직업훈련기관의 장, 직업소개사업자, 그 밖에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의 전 단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고용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달성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동일임금의 날' 지정 및 성별임금차별 해소

### '동일임금의 날' 지정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다수 발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6월 19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양성평등 태스크포스(TF)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같은 일을 할 경우 받는 임금이 남성의 55%에 불과하여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함. 이에 매년 5월 넷째 주 고용평등주간에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을 기념하도록 하여,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임(안 제6조의4 신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27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한국이 15년째 최하위를 기록한 반면, 2005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동일임금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적 노력을 벌이고 있음.

이에 매년 5월 넷째주 월요일을 '동일임금의 날'로 지정하여, 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임금격차 등 성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함(안 제6조의4 신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96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는 동법 제8조의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노동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에서 기인함.

이에 매해 전년도 성별임금격차 비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1년간의 임금이 동일해 지는 날을 다음 해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선포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각 분야의 관심을 제고함(안 제6조의4 신설).

##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명문화

「근로기준법」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0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노동법상 직접고용이 원칙임에도,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간접고용 증가로 인해 고용불안과 차별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됨.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실현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음(안 제2조제9호·제10호 신설, 안 제6조제2항·제3항 신설, 안 제6조의2 및 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 성별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시행 및 성별임금격차 공시제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임금격차 해소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은 해당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안,<sup>4)</sup>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안<sup>5)</sup>이 발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96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는 현행법 제8조의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노동환경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6조의2제2항제3호),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여, 임금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10 신설).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66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공시되는 내용을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단시간근로자 수, 기간제근로자 수, 그 밖에 파견·하도급·용역 등의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 수에 불과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데 곤란함.

이에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964)

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665)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제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 및 사업장이 공개하는 남녀 근로자 현황 정보에 직종·직급뿐 아니라,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포함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83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3월부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른 성차별 기업 명단이 공개가 되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으나, 현행법에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되어있어,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하여, 실질적 고용평등을 제고함(안 제17조의3).

## 직장 내 성희롱 규제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sup>6)</sup>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다수 발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66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리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성희롱 구제과정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또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성희롱 처리과정에서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 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확인된 경우로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자로부터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 나.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함(안 제14조제5항).
- 다. 사업주로 하여금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 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의 중단이나 접근 금지를 요구하거나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4조제2).

6) 직장 내 성희롱과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도 발의되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684)]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76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신고·증언·자료제출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리한 행위를 금지하며,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일터 환경을 조성하려 함.

이에

- 가.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가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허가 등 조치를 하고, 성희롱 피해 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 증언 등을 한 자에게도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 나. 사용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고객 등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 중단,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접근금지 요구,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일시적인 유급휴직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발의, 의안번호: 200279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함.

- 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안 제39조제2항제1호).
- 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안 제39조제2항제1호의3 신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59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음. 최근 직장 내 성희롱뿐만 아니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 나.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제1항 신설).
- 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업무를 중지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3항).
- 라.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제4항).

## 특수형태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보호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동법 개정 안도 발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66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희롱 방지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함(안 제12조).

##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배우자 태아검진 휴가 신설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다수이다. 즉,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임금보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었다.<sup>7)</sup>

또한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sup>8)</sup> 배우자에 대해서도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sup>9)</sup>도 발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대표발, 의안번호: 200068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성도 여성과 함께 출산과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출산 후 첫 1개월이 산모나 신생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며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음. 이에 현재 3일 이상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 이상 14일까지로 연장하고, 유급 휴가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함(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39조제2항제3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938)<sup>10)</su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임. 또한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보다 장기간의 휴가와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의 범위 내 3일의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의2).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 의안번호: 20006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9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5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217) 등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965)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604)

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559)<sup>11)</su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2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범위는 10일의 범위에서 7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기간 중 최초 7일은 유급휴가로 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또한 쌍둥이의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14일, 셋쌍둥이의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2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39조제2항제3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96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산·사산은 산모에게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출산과 마찬가지로 임신부에게 안정적 휴식과 심신이 필요하여 산모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돌봄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배우자는 휴가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6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한 여성의 대다수가 배우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7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난임치료 휴가 신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률로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93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고,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을 거쳐 병원의 시술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수정란의 착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률로 보장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안 제37조제3항, 안 제37조제4항제3호의2·제3호의3 신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67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불임 및 난임가구에 대한 시술비 지원,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불임 및 난임가구의 임신을 독려하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휴가(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안 제18조의3 신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발의, 의안번호: 200279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18조의3 신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을 호소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로 난임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8년 173,650명에서 2014년 215,392명을 기록함.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기여함(안 제73조의2 신설).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 출산휴가제도 실효성 제고

### □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해고로부터의 보호 기간 확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는 60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산전후의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을 확대하여 출산휴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즉,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확대하는 개정안<sup>12)</sup>, 출산전후휴가 이후 90일 이내,<sup>13)</sup> 또는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동안<sup>14)</sup>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의 예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마찬가지로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는 개정안<sup>15)</sup>과 조산 가능성이나 유산의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무급 출산전후휴가를 신설하는 개정안<sup>16)</sup>도 발의되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145)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ILO 권고기준 수준으로 확대하여,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하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90일) 이상 이 되도록 함(안 제74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973) 주요내용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90일)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1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973)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185)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597)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45)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97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185) 주요내용

사용자로 하여금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경우 그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90일 이내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의预告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3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597) 주요내용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18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제4항 신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45) 주요내용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60조, 제74조, 제110조, 제114조 및 제116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973) 주요내용

조산 가능성을 진단 받은 산모도 출산전후휴가 규정에 포함시켜 보호함(안 제74조제2항). 또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3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이내의 범위에서 무급휴가를 지급함(제74조의3 신설).

### □ 출산휴가 신청 절차 보완

출산휴가의 신청 절차를 보완하여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관계 서류제출 협조의무를 두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주가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용이하게 함(안 제18조, 제39조제3호의2 신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03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예정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제74조).

## □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 출산휴가 강화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 등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아래와 같이 발의되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59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이 정해져 있어 재계약 등에 대한 우려로 휴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기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74조제9항 신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03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때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이 끝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을 법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제74조제10항 신설).

## 그 외 모성보호 관련

그 외 '모성보호' 로 되어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제목을 '부모휴가' 로 변경하는 개정안<sup>17)</sup>과 모성보호의 감독을 강화하는 개정안<sup>18)</sup> 등이 발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938)<sup>19)</su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모성보호' 로 되어 있는 제3장의 제목을 '부모휴가' 로 변경하여 특히 초기 육아참여는 부, 모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를 명확히 함(안 제3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38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근로권을 강화함(제31조의3 신설).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938)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384)

19)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확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확대와 제도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474)<sup>20)</su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의 2014년 성별육아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임. 이는 육아의 책임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사회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성근로자는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근로경력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진적인 출산·육아제도를 갖춘 북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고 합계출산율 또한 1.7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우리의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까지 확대하고, 부부 근로자 중 남성인 근로자가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는 부부 근로자 중 1명의 육아휴직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20) 참고사항: 이 법은 송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제고

### ▣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고로부터의 보호 및 복귀 후 불리한 처우 금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그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sup>21)</sup> 내지 36개월<sup>22)</sup>로 확대하는 개정안, 대상 자녀의 연령 및 분할 횟수 등을 확대하는 개정안<sup>23)</sup> 등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뿐만 아니라, 복귀 이후 90일 기간 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개정안<sup>24)</sup>과 육아휴직을 마친 후 직장에 복귀하였을 때, 경력 산정이나 실적 평가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sup>25)</sup>이 발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1) 주요내용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까지 확대함(안 제19조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346) 주요내용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4항).

현행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까지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성장 단계별 자녀 돌봄의 필요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현행 1회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3호 및 제4호).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1)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346)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346)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144)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0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144)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649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90일 이내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에 따른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함(안 제19조, 안 제19조제2항제3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005) 주요내용

사업주가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대상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경력을 산정하거나 실적을 평가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및 안 제37조제4항제4호의2 신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1) 주요내용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하고, 권고사직, 정당한 사유 없는 보직변경이나 업무지시 등으로 명시함(안 제19조제4항 및 제19조의2제5항).

### ▣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의 출근으로의 인정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27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일·가정 양립에 지장을 준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안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적용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문제를 일부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 1년 경과 근로자' 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66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 1년 경과 근로자' 로 함(안 제 19조제1항)

### ■ 육아휴직 허용 절차 개선

육아휴직 허용 절차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강화하려는 동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육아휴직의 시기를 변경·연기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육아휴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 ■ 육아휴직 자동전환제 도입 등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하는 '육아휴직 자동전환제' 를 도입하고,<sup>26)</sup> 육아휴직 비허용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sup>27)</sup>이 발의되었다.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1)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양육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상당수가 경력 초기의 직장인으로서 육아휴직을 꺼리는 직장 문화나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양육지원제도를 순조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자동전환제를 도입하되, 근로자가 그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안 제19조제2항 신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벌칙 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함(안 제37조제3항).

###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과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sup>28)</sup>

그리고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던 것을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자동전환' 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sup>29)</sup>

나아가 근로자가 출산, 임신 외에도 질병, 학업, 가족 간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sup>30)</sup>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발의, 의안번호: 200279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부모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을 3회(단, 부모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개선·보완함(안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20027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5)

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3)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3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던 것을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과정에서 고용상의 배려를 강화함(안 제74조제7항, 안 제74조제8항·제9항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과 가정,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숙련된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점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임신, 육아 외에도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 가족돌봄휴직 제도 실효성 제고<sup>31)</sup>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하는 개정안<sup>32)</sup> 및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돌봄휴가를 마련하는 개정안<sup>33)</sup>이 발의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27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부부·한부모가정 등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가 그의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개정을 통해 2014년 2월 7일부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외에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때에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그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31)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 당사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되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528)] 현행법에 병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도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병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2조의2 신설 등).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274)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자녀의 감염병 발생과 같은 사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소 30일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외에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필요함.

이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함(안 제22조의3 신설).

## 경력단절 여성 지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발의, 의안번호: 2005872)<sup>34)</sup>’이 2017년 3월 2일 원안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이 강화되고, 서비스 전달체계 등이 체계화되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장 대안발의, 의안번호: 200587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7. 3. 2. 원안가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결혼·임신·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하더라도 기존의 경력에 비해 임금 및 직종 등에 있어 하향 취업하는 등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함께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단절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 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3)

3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902, 대안(반영폐기))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845, 대안(반영폐기))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875)’이 2016년 12월 1일 수정가결되어, 가족친화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87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6. 12. 1. 수정가결**

현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현재 하위법령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여성(젠더) 폭력

여성(젠더)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예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우선, 성폭력범죄에 있어 심신미약 등에 의한 감경 배제를 더욱 강화하고,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적용을 확대하며, 신체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또한 여성혐오 및 성적비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려는 입법안도 발의되었다.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관리와 관련하여 법제 정비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발의, 의안번호: 2003968)’ 이 2016년 12월 1일 원안가결되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336)’ 또한 2016년 12월 1일 수정가결되어, 성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이 다소 강화되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초기대응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571)’ 이 2017년 3월 2일 수정가결되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신고에 따른 출동 및 현장 출입 권한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게 되었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더욱 강화하고,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죄를 추가하며, 심신미약 등에 의한 감경을 배제하는 한편, 가정보호사건 처리 강화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를 통해 가해자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1건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773)’ 이 발의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 강화에서부터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발, 의안번호: 2003997)’ 이 2016년 12월 1일 원안가결되어,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띄우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숙박업 등 업소에 출입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하에서는 여성(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내용을 각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 성폭력 처벌 강화

### 심신미약 등에 의한 감경 제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 받는 경우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형법」 제32장에 해당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감경 및 작량감경을 배제하고, 나아가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는 동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sup>35)</sup>

마찬가지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미약 등에 의한 형의 감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만 하여, 여전히 감경 받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데, 따라서 동법 제20조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더욱 확실히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sup>36)</sup>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566) 주요내용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형법」 제32장에 해당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감경 및 작량감경을 배제함(안 제306조의2제1항 신설).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함(안 제306조의2제2항 신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411)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배제를 강화함(안 제20조).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566)

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4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50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503) 주요내용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법」 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함(안 제20조제1항).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후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 강간죄 적용 범위 확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현행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하고,<sup>37)</sup> 강도강간미수범도 성폭력범죄에 추가하는 개정안<sup>38)</sup>이 발의되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을 최협의 기준인 “항거불능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그러나 이에 의하면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현행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하여, 법원이 이른바 “최협의 폭행·협박”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소함(안 제297조 및 제297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의안번호: 2001655,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도강간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추가하여(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함.

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726)

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2001655, 대안반영폐기)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적용 장소 확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는 추행이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규정하면서,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사람에게 법원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sup>39)</sup> 따라서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실을 포함하고,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056) 주요내용

현행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232) 주요내용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정하던 것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의 화장실'을 추가함으로써, 성적 목적을 위해 공중화장실이 아닌 상가건물 화장실 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메움(안 제12조 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346) 주요내용

공중밀집 장소의 정의를 공중밀집 장소 이외에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안 제11조), 현행법상 화장실의 정의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정의함(안 제1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874) 주요내용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에 설치되었거나 부속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공공장소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9)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056) 참고.

## 신체 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단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이 유포한 경우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하여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sup>40)</sup>

또한 불법 신체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등을 몰수하는 개정안,<sup>41)</sup> 직접 촬영한 신체뿐만 아니라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sup>42)</sup>이 발의되었다.

나아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sup>43)</sup>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28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단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고, 명예훼손죄로만 처벌하여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이에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39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상 불법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과 위험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함.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이별에 따른 보복범죄에 대응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와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을 때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2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394)

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943)

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043)

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700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94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불법 촬영된 영상물 및 촬영매체를 몰수하는 규정이 없음. 현실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휴대폰의 경우 연락처, 사진, 문서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피의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나, 촬영매체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함(안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04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화상채팅 등을 통해 촬영되어 다른 사람의 신체가 등장하는 영상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현행법 제14조제1항의 신체가 아니며, 이를 촬영하는 것은 무죄라고 판결하여(대판 2013.6.27. 선고 2013도4279) 논란이 제기됨.

이에 직접 촬영한 신체뿐만 아니라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70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현행법은 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만 가중 처벌하고 있음.

이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4조).

## 여성혐오 및 성적비하 처벌 강화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소재로 한 부호·문헌·음성·화상·영상을 통해 타인을 희롱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sup>44)</sup>

또한 현행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서 더 확장하여, 업무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sup>45)</sup>

그리고 성적 목적을 위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 이외에도

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대표발의, 2006722)

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7057)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sup>46)</sup>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대표발의, 2006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성적 언동을 통한 희롱이나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소재로 한 부호·문헌·음성·화상·영상을 통한 희롱에 대하여 마땅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모욕죄에 의거하여 처벌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소재로 한 부호·문헌·음성·화상·영상을 통해 타인을 희롱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11조제2항 신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705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성과 관계된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함(안 제13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17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sup>47)</sup>

이에 성적 목적을 위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175)

47) 대법원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현행법 제13조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성폭력범죄의 경우,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53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인륜범죄인 성폭력범죄에 대해 여전히 공소시효를 두고 있어, 일정기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더욱이 과학기술 발전으로 DNA 정보 등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1조제2항).

## 고위공직자의 추행죄 처벌 강화

고위공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동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7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는 도덕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들의 잇따른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이에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보완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었다.

### □ 의제강간 기준 연령 확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78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도 간음이나 추행의 의미를 알고 동의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안 제305조).

### □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기준 연령 확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에 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판단력·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므로 적용 필요성이 높다는 제안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안 제7조).

### □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의 간음죄 처벌 강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48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전담경찰관, 중학교 교사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 하는 자가 담당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러한 사건에서 현행법 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 를 적용하려면 직접적인 위계·위력을 입증해야만 하고, '미성년자성매매' 를 적용하려고 해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드러남.

이에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있어 심신미약 등에 의한 감경 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567,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중 “아니할 수 있다” 를 “아니한다” 로 개정하여 심신미약 등에 의한 감형을 제한함(안 제19조).

##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537,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정기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114,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관련기관에 있어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상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시·도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추가함(안 제56조제1항제2호의 2·제19호 신설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관리 관련 정비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반영을 위한 개정

최근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보존·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위헌결정을 내렸다(2015헌마688, 2016. 3. 31. 결정).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관 4명 및 5명이 위헌 의견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2014헌마340, 2015. 7. 30. 결정).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 발의, 의안번호: 2003968)<sup>48)</sup> 이 2016년 12월 1일 원안가결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발의, 의안번호: 200396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6. 12. 1. 원안가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5헌마688, 2016. 3. 31. 결정), 헌법불합치결정(2014헌마340, 2015. 7. 30. 결정)을 반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를 강화함.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4호).

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2001655, 대안반영폐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696, 대안반영폐기)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나. 현행 등록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안 제42조제1항 단서).
- 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의2 및 제52조 신설).
- 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차등화를 두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등으로 정하되, 법원이 경합범의 경우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경우 판결로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4항).
- 마. 신상정보 확인주기 또한 차등화를 둬(안 제45조제7항).
- 바.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도입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도록 하고, 선고받은 형의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후 잔여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함(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 신상정보 관리 강화

성범죄자 신상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제출하거나 변경 제출할 때에도 관할 경찰서에서 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안<sup>49)</sup>과 등록기간 중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등록대상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개정안<sup>50)</sup>이 발의되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75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상정보는 그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반기 1회 그 진위와 변경 여부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애초에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처음 제출하거나, 이후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경찰서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제출하거나 변경 제출할 때에도 관할 경찰서에서 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관서의 장은 신상공개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기간 중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등록대상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함(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2조).

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752)

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612)

##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 관련 정비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추가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33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가목).

## 성폭력 등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관리 관련 정비

전자발찌를 결과적으로 손상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미수범에 대하여도 처벌하여 재범방지를 강화하는 개정안<sup>51)</sup> 등이 발의되었다.

그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336)’은 2016년 12월 1일 수정가결되었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66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발찌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전자발찌를 무용화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34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폭력범죄 정의 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다목).

또한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미결구금 중 판결 확정 전에 석방된 후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부착명령의 집행을 위해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하거나, 구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33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6. 12. 1. 수정가결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도 가해제되어,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부착명령은 가해제하되 보호관찰은 계속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범 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처우가 불가능함.

이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6항 단서 신설, 제19조제2항).

5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668)

## 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보호 강화

###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571)' 이 2017년 3월 2일 수정가결되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57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7. 3. 2. 수정가결

성폭력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 범죄 혐의 입증에 관한 충분한 증거 확보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등의 신속한 조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동 이후에도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사건 개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함(안 제37조의2 신설).

###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48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피고인이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하는 경우가 있어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조사 및 수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판장은 즉시 이를 중시시키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등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학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될 뿐,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실시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역시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 담당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청소년 등이 생활하는 영역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안 제5조제1항).

## 가정폭력 처벌 강화

### 응급조치·긴급입시조치·입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강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응급조치·긴급입시조치·입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퇴거시키는 개정안,<sup>52)</sup>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도 입시조치 및 긴급입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sup>53)</sup>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단계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도록 하는 개정안<sup>54)</sup>이 발의되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67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긴급입시조치를 취하고, 법원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입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주거공간으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응급조치·긴급입시조치·입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하도록 함(안 제5조·제8조·제8조의2·제29조 및 제55조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의 안정 회복과 가정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현행 목적규정을 가정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수정하고, 입시조치 등의 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하여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도 입시조치 및 긴급입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8조 및 제8조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04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단계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도록 하는 등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여 재발방지를 강화함(안 제5조).

5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674)

5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811)

5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040)

##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심신미약 등에 의한 감경 배제

가정폭력범죄에 있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처럼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8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정구성원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죄 추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04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및 제322조(미수범)의 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사목).

## 가정보호사건 처리 강화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04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가정보호사건은 2010년 3,257건에서 2015년 20,131건으로 6.1배 증가하였는데, 특히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가정폭력의 유형 중 상해·폭행 등 신체적인 폭력이 84.4%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가정폭력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경미하게 처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상담위탁을 받은 상담소들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들의 불성실한 상담태도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이에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정보호사건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

또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함(안 제9조의2 삭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가정폭력행위자' 를 '가정폭력 가해자' 로의 용어 변경,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77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0년대 말 가정폭력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변화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및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각종 의료·법률 지원 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왔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역시 계속 양산되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한 바,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와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며,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 가.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1조의2 신설).
- 나. '가정폭력행위자' 를 '가정폭력가해자' 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2호, 제6조제3호, 제7조의3제1항제2호, 제9조의4제3항 및 제6항).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8호 신설).
- 라. 국가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안 제4조의8 신설).
- 마.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바.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사. 피해자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1항제4호의2 신설).
- 아.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 자.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삭제).
- 차. 피해자등의 개인정보 및 신변 보호를 위해 비밀 엄수 의무자를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함(안 제16조).
-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제4항 삭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강화

###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 등 안내문 추가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성매매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보상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발의, 의안번호: 2003997)<sup>55)</sup>'이 2016년 12월 1일 가결되었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장 대안발, 의안번호: 200399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6. 12. 1. 원안가결

최근 정보통신망이 성매매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신고 보상에 대한 안내문을 홍보하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 잠재적 성 매수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실시간 대화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에 대한 안내문을 추가함(안 제33조제1항 개정)

5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2001405, 대안반영폐기)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485, 대안반영폐기)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공무원의 숙박업소 지도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발의, 의안번호: 2003997)<sup>56)</sup>’ 이 2016년 12월 1일 가결되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장 대안발, 의안번호: 200399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6. 12. 1. 원안가결

성매매(알선)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한 지도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 설명, 상담소 안내 등을 통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신설).

5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2001405, 대안반영폐기)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485, 대안반영폐기)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가족 및 돌봄 지원

가족 및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확대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출산 해소를 위한 입법안이 많았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우대이용권 지급을 비롯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추진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주를 이루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총 4건 발의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강화

2015년 3월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고,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양육비 채무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악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재산조사를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더욱이 재산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제공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 알리도록 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224) 주요내용

여성가족부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세·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990)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제공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 알리도록 함(안 제16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237) 주요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 후 즉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본인 동의 없이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6조).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자료 관리 보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자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23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보존과 파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무이행이 달성된 경우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해당 자료 등이 파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그 제공 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보존한 후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보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해서도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신청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지원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쳐 저소득 양육부·모와 자녀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많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긴급지원 금액 책정 시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4조).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4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일정한 외국인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한 외국인 가족 등이 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함(안 제4조의3 신설).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46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4조의3 신설).

### 다문화가족 교육 강화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sup>60)</sup>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sup>61)</sup>이 발의되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4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이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등과 그 배우자 상호간의 이해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주로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사회적응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6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41)

6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30)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우관계에 있는 일반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함.

이에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263)’이 발의되어 2017년 3월 2일 수정가결되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26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3월 2일 수정가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그 결과를 관련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함(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5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통합 운영 규정 마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하고,<sup>62)</sup>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sup>63)</sup>이 발의되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219)<sup>64)</su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로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한 피해자 지원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2조제4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6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219)

6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713)

6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18호)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장려금 및 다자녀우대권 등 근거 규정 마련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개정안,<sup>65)</sup>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개정안,<sup>66)</sup> 다자녀카드를 지급하는 개정안,<sup>67)</sup> 다자녀우대이용권을 지급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sup>68)</sup> 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09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33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자녀 1인당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제도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출산가구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안 제10조의2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 보건의료, 교육활동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지원 발굴,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다자녀 카드'를 지급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적 우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안 제10조의2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교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우대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안 제10조의2 신설).

6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090)

6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335)

6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10)

6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721)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95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출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안 제10조의2 신설).

### 그 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시책

교육·취업·결혼·주거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우수하게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을 포상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7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장애요인의 해소를 위해 교육·취업·결혼·주거 등에 대한 지원 시책 등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기구 설치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등을 설치하여 정책 추진을 강화하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09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등 지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95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저출산 문제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 하에 체계적·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정하여 출산·양육정책에 근거한 서비스제공이 가정의 수요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실화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3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 아이돌봄 지원 강화

### 손자녀돌보미 신설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4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이돌보미의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을 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을 지급함.

“손자녀돌보미”란 제19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후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외조부모를 포함한다)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제7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가구의 손자녀돌보미에게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수당을 지급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호).

##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sup>69)</sup> 아이돌봄서비스 소개업(일명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sup>70)</sup>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77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보험의 책임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제3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47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 기준 준수, 거짓 정보의 제공 금지, 필요서류의 작성 및 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의2~제18조의6 신설)

6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776)

7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477)

## 국내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등 관리

국내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13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와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국내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573건으로 동 기간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인 214건보다 월등히 많으며, 피해 유형도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과도한 위약금 요구, 허위정보 제공, 회원관리 소홀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행법상 실태조사를 국내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함(안 제2조의2).

## 성평등 및 성주류화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날’을 지정하고, 유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대한 국가행동 계획 수립·이행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성별임금차별 해소 및 여성인력 활용 제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008)’이 2016년 12월 1일 수정가결됨에 따라, 고용 상 양성평등 내용에 임금을 포함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에 있어 차별적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성주류화와 관련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2002588)’이 2016년 12월 1일 수정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822)’ 또한 2017년 3월 2일 수정가결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 권고 외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의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까지 확대되었고,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 양성평등 촉진

### ‘여성의 날’ 지정

‘여성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4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뉴욕에서 기본권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에서 유래되었고, 이후 UN이 1975년 제1차 세계여성대회가 열린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일로 공식 지정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 28개 국가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성들의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여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 향상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로 인한 갈등, 경력단절 및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여성 빈곤 위험, 성범죄에의 노출 등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험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음.

이에 범국민적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38조).

###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여성인력 활용 제고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시 임금 등에 대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008)’이 2016년 12월 1일 수정가결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0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6. 12. 1. 수정가결

현행법에서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성의 저임금 및 여성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4조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항에 따른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4조제5항).

## 유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 규정

유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등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하고,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13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2000년 무력분쟁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채택하고, 후속결의 1889호 등에서 안보리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음.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유엔의 결의를 반영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중에 있으나, 결의안의 국가행동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행점검, 평가 및 개선요구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등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하고,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함(안 제11조제2항제7호 및 제41조제3항 신설).

## 성주류화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실효성 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2002588)’이 2016년 12월 1일 수정가결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 권고 외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 중인 조례·규칙,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토록 하였다.

나아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822)’이 2017년 3월 2일 수정 가결되어,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의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의 반영결과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의 수립·시행 절차를 보다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 되도록 하였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의안번호: 200258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6. 12. 1. 수정가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 중인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7. 3. 2. 수정가결

정책 등의 개선 권고의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안 제11조제1항).  
일부 미비되어 있는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제출 기한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개선사항의 반영결과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 여성 건강

여성 건강과 관련해서 산모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들은 난임치료, 미숙아 출산,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무엇보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산전·산후 우울증 등 임신부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국가의 지원 및 시책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발의, 의안번호: 2003657)' 이 2016년 11월 17일 원안 가결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고위험 임신부의 치료 시설 및 장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다. 또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나아가 산후조리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신부와 영유아의 보건관리 및 자녀의 출산계획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 난임 치료, 미숙아 출산 및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하는 개정안,<sup>71)</sup> 미숙아로 출생하여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의 각종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sup>72)</sup> 고령,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sup>73)</sup> 등이 발의되었다.

특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발의, 의안번호: 2003657)’<sup>74)</sup>이 2016년 11월 17일 원안 가결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신부의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고, 난임전문상담센터가 설치·운영되게 되었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93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부부에게 있어서는 임신과 관련된 직접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 또한 필요함.  
이에 난임극복지원 사업의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적으로 명시함(안 제11조제2항 제1호의2).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93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생아 가운데 미숙아의 비율이 10년 전 4.6%에서 6.7%까지 늘어난 상황임.  
이에 미숙아 또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의 각종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미숙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7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934)

7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93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06743)

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437)

7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065, 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096, 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818, 대안반영폐기)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0674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정한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 지원 이외에 치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6 신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43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6 신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대안발의, 의안번호: 200365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6. 11. 17. 원안가결

고령 또는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부부가 겪는 정서적·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신부의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 임산부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정신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관련 질환 발생 시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sup>75)</sup> 등이 발의되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발의, 의안번호: 2003657)’<sup>76)</sup> 이 2016년 11월 17일 원안가결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1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관련 질환 발생 시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대안발의, 의안번호: 200365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6. 11. 17. 원안가결

산전·산후 우울증은 임산부, 태아 또는 영아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7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115)

7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065, 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096, 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818, 대안반영폐기)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다수 발의되었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93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제재의 실효성이 낮음.

이에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항 신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발의, 의안번호: 200305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감염병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등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 및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도 미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받도록 건강진단 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의사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5조의5).

나.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는 그로 하여금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5조의6).

다.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9제항).

라. 산후조리업자가 질병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함(안 제26조제항제2호, 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마.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경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의사로부터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제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신설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10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의 조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산후조리업자의 감염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의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75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생아는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발달하지 않아 스스로 분유섭취 조절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산생아가 혼자 분유를 먹도록 입에 젓병을 물려 놓는 방법(일명 '셀프수유')으로 수유하고 있어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수유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함(안 제15조의4제5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39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과 주민의 범위 그리고 재정 능력 등에 따라 다르고,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효과적, 안정적 추진을 도모함(안 제15조의7제1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신설).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관련 실태조사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관리 및 자녀의 출산계획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현행 가족계획사업의 목적을 오늘날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18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관리 및 자녀의 출산계획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1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계획사업을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受胎調節)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가족계획사업은 광복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과잉 인구가 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인식됨에 따라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는 거리가 먼 규정이고, 실제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제9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등).

